

기안용지

분류기호	보행1438-	(전화번호 72-9441)
문서번호		전결규정 3 조 1항 국장 전결사항
처리기관	보건사회국장	
시행일자	공고제 182호	
보존년한	[Large Signature]	
보조기관	보건의정과정장 [Signature] 환경위생계장 [Signature]	기획관 [Signature] 예산과장 [Signature] 회계과장 [Signature] 보건행정계장 [Signature] 예산계장 [Signature] 심사계장 [Signature]
기안책임자	이든화	[Seal: 1973. 8. 22] [Seal: 1973. 9. 22]
경유	각안참조	통계
수신		
참조		
제목	1973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 시험 실시	
제 1안 (내부 결재)		
1. 환경 1438-10645 (73. 8. 23) 호와 관련임.		
2. 73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보건사회부 내규 제25호 이용		
사 및 미용사 자격 시험 규정에 의거, 위.미용사 자격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토록 합니다.		

다과 (공공) 안심사
 문화공보심사
 국민과학
 [Handwritten signatures and notes]

제수
 추안
 일

정서
 [Signature]
 판인
 발송

0201-1-8A

3688

190mm x 272mm 백상지 40g/㎡

1969. 11. 10. 승인

소문예환내역

(한) 실건비 (한) 보건가생관리 (세항) 보건가생

계 626,000

수령 47,000

수출비 164,000

수수료 275,000

인화료 1,000



3689

가. 실시요령 : 별첨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함.

3. 이 자경 시험 소요 예산(세입, 세출) 집행은 별첨 소요 예산서와 같이 집행하고자 하오며, 시험 공고요는 공고 즉시 청구에 의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1. 시험 실시 계획서 1부.

2. 소요 예산 집행계획서 1부.

(제 2 안)

수신 보건사회부장관

참조 환경위생담당관



제목 동 건

1. 환경 1438-10645 (73. 8. 23) 로와 관련임.

2. 당시 73년도 이.미용사 자경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케 되었기 보고 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제 3 안) (과 시도에 대한 통보안)

수신 나 2-11

제목 동 건

1. 당시 73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경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관하에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3690

(제 4 안) (각 구 보건소 통보안)

수신 서사 5-13

제목 동 건

1. 당시 73년도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과 같이 실시하니 귀 관내에 널리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함 것이며,

2. 전 이.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무자격자는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조치하고,

3.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종업원 확인증 신청이 있을 때는 신고 담당과대로 후 확인증 발급에 정확을 기함것.

4. 기마를 자격시험 구비 ^{87년} ~~구비~~ 된 건강 진단서 등을 신속 발급토록 하여 시험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함것.

첨부 : 공고문 1부. 끝.

(제 5 안) (해당협회 통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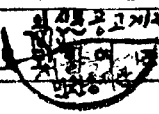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동 건

1. 당시 73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협회 산하회원들에게 널리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하여 주시고

2. 귀 협회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규정 제8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서학과 시험 위원 및 심기 시험 위원을 아래 양식에 의거 이력서를 첨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과목당 1 명씩)

종. 별 | 성. 명 (한문) | 학. 령 | 직. 위 | 년. 령 | 육. 토 | 주. 소

첨부 : 공고본 1부. 끝.
수신처 대한미용사회 서울특별시 연암회장 대한 미용사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제 6 안 (보도외퇴안)
수신 문과공보실장
제목 이.미용사 자격 시험실시에 따른 신문 공고 게재보도외퇴
1. 당시 73년도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 니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널리  시키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본 1부. 끝.
제 7 안 (시험장소 사용외퇴)
수신 정화 고등기술학교
제목 고실 사용 외퇴
1. 당시 73년도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실시코자 하는바 시험장소 로 아태와 같이 귀고를 사용코자 외퇴하오니 실습실 및 실습 기구를 사용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일시
73. 11. 4 (일) 09:00-17:00 (이용)
73. 11. 11 (일) 09:00-17:00 (미용)
2.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당시 소정 금액을 학교장 청구에

외하여 주실 마겠습니다. 끝.

제 8 안 (시험위원 추천)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등 건

1. 당시 73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교 교장 및 교사중 학과 시험위원 및 실기시험위원을 아테 양식에 외겨 이력서 첨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과 과목당 1 명씩)

종	번	성	명	학	역	직	위	주	소

첨부 :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 정화. 중앙. 무궁화. 서울여자. 예림여자. 에덴직업훈련
고등기술 학교.

이. 미용사 시험 실시 계획서

1. 시험종별

가. 미용사 자격 시험

나. 미용사 자격 시험

2. 시험일시

가. 이. 미용사 자격시험

1) 학과시험 : 73. 10. 28 (일) 09:00-17:00

2) 실기시험

미용사 : 73. 11. 4 (일) 09:00-17:00

미용사 : 73. 11. 11 (일) 09:00-17:00

3. 시험장소

이.미용사 자격시험은 각종 기술분야를 다루는 시험인만큼 이에 소요되는 제반 시설이 실험실과 약 1,500 여명의 응시자를 수용할수 있는 시내 교통이 편리한 중앙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을 사용토저함.

가. 학과시험

덕수상업고등학교 (중구 을지로 6가 18)

나. 실기시험

정확로동 기술학교 (중구 남산동 1가 8)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가. 학과 시험 발표 : 73. 11. 2 (금) 15:00-시청 부정

나. 실기 시험발표 : 73. 11. 16(금) 15:00-시청 부정

5. 시험과목

서울특별시

3694

가. 이.미용사 학과 시험 (이용.미용 공통)
1) 위생법규
2) 소독법
3) 공중위생학
4) 생리 해부학 (피부과학 포함)
5) 물리 및 화학 (화장품 화학 및 이용.미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6) 이용 또는 미용 이론 (이용사는 이용이론, 미용사는 미용이론)
나. 이.미용사 실기 시험
1) 이.미용의 기초적 기술 (이용사 - 조발, 면도) (미용사 - 아이롱, 샴핑, 확장)
2) 소독약의 취급 (이용, 미용 공통)
3) 위생상의 조치 (이용, 미용 공통)
6.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미용사 자격시험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필한 이용 또는 미용학원에서 6개월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영업개업 허가를 받은 이.미용업소에서 1년 이상을 종사한자.
나.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허가영업장소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7. 응시원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통 (소정 양식).

나. 이력서 1통
다. 건강진단서 1통 (보건소장 발행)
바. 학원수료 확인증 1통 (등록된 학원 수료자에 한함)
마. 사진 4매 (앞모, 정면 상반신 최근 촬영 3x4 센티)
바. 종업원 확인증 1통 (보건소장 발행)
사. 수수료 2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첨부)
아. 주민등록초본 1통
8.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73. 10. 1- 10. 15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
9. 기 바
제출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사 응시자는 심기 시험 실험상·모델 관계가 있어 응시 15일전부터 조바지 많것을 응시원서 접수 시에 주지 시킨다.
10. 시험 위원회 구성 및 위촉
가.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규정 (보사부 예규 제25호) 에 의거 이.미용사 자격시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학과 시험 및 심기시험 위원 위촉은 별도 구분 위촉한다)
나. 시험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보건사회국장 : 위원장은 시험기간 중 위원과 관계 직원 을 지휘 감독한다.
부위원장 - 보건행정과장 :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

을 보좌한다.
간사 - 환경위생계장 : 시험실시에 따른 준비와 시험장을 관리하여 관계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서기 - 환경위생계 담당직원 : 서기는 시험 전반에 대한 사무를 담당 한다.
학과시험위원 - 이.미용사 각 과목당 2명 (필도 위촉)
심기시험위원 - 이용 2명(필도 위촉) 출제 및 채점에 책임을 진다. 미용 2명(필도 위촉) 출제 및 채점에 책임을 진다.
11. 시험문제 출제 방법
가. 학과 시험
1) 학과 시험 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문제 40문제(객 관식)를 출제하여 위원장은 80문제중 20문제를 과목별로 30분 이내 에 대답할수 있는 정도로 혼합 선택한다.
2) 출제 범위는 현 이.미용 3등기술학교의 수업과정에서 수업하는 내용의 정도를 출제한다.
3) 출제한 시험문제는 당해시험 위원이 밀봉납인하여 위원 장에게 제출한다.
나. 심기시험
심기시험(위원은 이.미용외 기초적 기술과 소독약 위생상의 조치 등 으로 구분 구분야에 대한 기술 습득을 측정한다.
12. 시험장 관리 및 감독
가. 보건행정과 직원 및 보건사회국 산하직원을 차출시험에

관한 사무 및 시험장 감독원으로 배치한다.

(차출 인원은 응모자수에 의거 추후 결정함)

나. 감독원은 배치된 시험장 이외에 시험장 출입을 금하며 장내에서 시험 답안지를 수집하고 이를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시험장내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즉발 책임을 지고 부정 행위자를 시험위원에게 인계한다.

다. 위원회의 서기는 감독원의 배치 및 답안지 수집의 책임을 진다.

13. 시험의 채점 방법

가. 학과시험은 과목당 20문제에 배점을 각 5점으로 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맞은 답안 계산하며 틀린 답의 감점없이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채점한다.

나. 실기 시험은 이.미용외 기초적 기술과 소독 취급 위생상의 조치로 구분 각분야의 기술 습득 상태를 각 실기시험 위원이 측정 결과를 점수로 채점한다.

14. 시험 합격 기준

가. 학과시험

1)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6과목 총점 600점 만점으로 하고 과목당 40점 이상 총득점 240점 이상을 득 하면 합격으로 하고 239점 또는 그 이하인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총득점이 240점 이상이라도 1과목이 39점 또는 그 이하인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실기시험

1) 각 실기시험.위원은 이.미용외 기초적 기술과 소독 취급

위생상의 조치로 구분 각분야에 대한 각각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평균 60점 이상은 합격으로 하고, 60 점 미만 인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심기시험 합격자는 시험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최종 합격자로 한다.

15. 합격증 교부

합격자에 대하여는 소정 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73. 12. 15 까지 당시 보건행정과에서 교부한다.

16. 시험 위원 사례금

학과 시험 위원, 심기시험 위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전도 자급에 의거 지급한다.

17. 시험 실시 공고는 서울특별시 1회 공고한다. 끝.

소모 예산 집행 계획서

1. 예산 내역서

(과) 보건비 (과) 보건 위생 관리 (세항) 보건 기성

내역: 가. 임차료 15,000 원

시험장 임차 - 학과 30실 \times 1,000 원 = 30,000

실기 4실 \times 2실 \times 15,000 원 = 120,000

(실기 기구 임차료 포함)

나. 수송비 144,000 원

응시권사 인쇄 5천 \times 2000 원 = 10,000

시험 문제 60 \times 1,000 원 = 60,000

시험 관양지 10 \times 1,000 원 = 10,000

합격증 20 \times 4,000 원 = 80,000

출제 용지 5 \times 600 원 = 3,000

합격자 명부 5 \times 200 원 = 1,000

접수부 30 \times 1,000 원 \times 2층 = 6,000

채점부 10 \times 30 \times 2 \times 100 원 = 6,000

시험기구 운송 2000 \times 2 \times 2 \times 200 원 = 8,000

기타 시험 용품 20,000 원

다. 수수료 275,000 원

실기 시험장 임대료 2000 \times 3실 \times 4000 원 = 24,000

채점 수수료 (전라계생이운영) 129,000

공고료 (서울선동) 22,000

서 3700 별지

라. 수 량 5,500 원

출제 의권 수량 $1,000 \text{ 원} \times 6 \text{ 주} \times 2 \text{ 일} = 12,000$

가시권 수량 $150 \text{ 원} \times 50 \text{ 주} \times 6 \text{ 주} = 45,000$

계 62,500 원

2. 집행 내역서

과 목	집행 내역
가. 임차료	청구에 의거 지불
나. 수 용 비	1) 시험 문제 양산지 인쇄는 비품을 오해므로 전도각금 집행(지방행정 사무관 이준화 수령 전달)
다. 수수료	2) 기타는 회계과의 의뢰함 1) 신문 광고료는 청구에 의거 지불 2) 기타는 지방행정 사무관 이준화 수령 전달
라. 수 량	지급 문서에 의거 지방행정 사무관 이준화 수령 전달.

· 11

이.미용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
(3x4)
진

본 적 _____
 주 소 _____
 성 명 _____ 학문 _____)
 생년월일 서기 19 _____ 년 월 일생 (당 세)

금번 기사에서 시행하는 이.미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별첨 관세서류 첨부하여 원서를 제출하나이다

1. 응시구분 : 이.미용사

서기 1973 년 월 일 지원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수료첨부 (시. 수입증지 200원)

이.미용사자격시험응시표

수험번호	사	진
응시구분	용사	
본적	_____	
성명	_____	
생년월일	19 _____ 년 월 일(당 세)	

서울특별시이.미용사자격시험위원회

이.미용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증

접수번호 _____
 응시구분 **용사**
 본 적 _____
 성 명 _____
 접수일자 _____
 서울특별시이.미용사
 자격시험 위원회

종업원 확인증

주소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종사기간	업소명	허가번호	업주명	소재지
자.지.만 년 개월				
자.지.만 년 개월				
자.지.만 년 개월				

상기자는 상기업소에서 보조원으로 종사한 사실이 종업원 신고 매장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증명함

1973 년 월 일

구보건소장 ①

수료 확인증

본적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소정의 과정을 수

료한 자임을 확인함

1973 년 월 일

학원장

①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이력서
 2. 보건소장 발행 건강진단서 1통
 3. 주민등록 초본 1통
 4. 사진 4매 (3×4)
 5. 종업원 확인증 (응시원서이면)
 6. 수료 확인증 (응시원서이면)

주 의 사 항

1. 이 포블 후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험을 받지 못한다
2. 수험장에 입장지에는 이포블 받드시 왼쪽 흉부에 달아야 한다
3. 수험자는 시간을 엄수할 것이며 수험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공고안심사	1973. 9. 21	제 180호
심자자	법제처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이. 미용사 자격시험 공고

당시 73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1973. 9. .

서울특별시장 양 맥 식

1. 시험일자 및 장소

가. 이용사 자격시험

- 1) 학과시험 일시 : 73. 10. 28 (일) 09:00
장소 : ~~덕수상업고등학교~~ (중구 을지로 6가 18)
- 2) 실기시험 일시 : 73. 11. 4 (일) 09:00
장소 : 정화여자 고등 기술학교 (중구 남산동 1가 8)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미용사 자격시험

- 1) 학과시험 일시 : 73. 10. 28 (일) 09:00
장소 : ~~덕수상업고등학교~~ (중구 을지로 6가 18)
- 2) 실기시험 일시 : 73. 11. 11 (일) 09:00
장소 : 정화여자 고등 기술학교 (중구 남산동 1가 8)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함)~~

2.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미용사 자격시험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받은 이.미용학원에서 6개월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영업개설허가를 받은 이.미용학원에 1년 이상 공학한 자.~~

다.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이.미용업 허가개업업소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행헌법 제32조 및 수형자 직업훈련 규정에 의한 특과훈련교도소 시.도립.소년, 소녀 직업보도소 및 시도립 부녀사업관 여자 기술원에서 소정의 미용과 및 미용과의 과정을 수료한자.

다. 심기시험은 73년도 시행이, 미용사 자격 학과시험 합격자에 함함.

3. 시험과목 (이.미용 공통)

가. 학과시험

- 1) 위생법규
- 2) 소독법
- 3) 공중위생학
- 4) 생리해부학 (피부과학 포함)
- 5) 물리 및 화학 (화장품 화학 및 이.미용에 관한 부분에만 함한다)
- 6) 미용 또는 미용이론 (미용사는 미용이론, 미용사는 미용이론)

나. 심기 시험 과목

- 1) 미용 또는 미용의 기초적 기술
 - 가) 조발 면도 (미용사에 함함)
 - 나) 아이롱, 셰빙, 확장 (미용사에 함함)
- 2) 소독의 취급 (이.미용 공통)
- 3) 위생상의 조치 (이.미용 공통)

4.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장소

가. 응시원서 접수일시 : 73. 10. 1 - 10. 15

09:30 - 17:00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

5. 응시 준비 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당시 소정 양식)

나. 이력서 1통

다. 사진 4매 (뺨모, 상반신 정면 최근촬영 3X4)

타. 수수료 2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첨부)

마. 건강진단서 1통 (보건소장 발행)

바. 종업원 확인증 1통 (응시원서 이면 보건소장 확인)

사. 학원 수료 확인증 1통 (등록된 학원 수료자액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통

6. 합격자 발표

가. 학과시험 발표 : 73. 11. 2 (금) 15:00

나. 심기시험 발표 : 73. 11. 16 (금) 15:00

다. 장 소 : 시청 후정 게시판에 게시

7. 기타 주의사항

가. 학과시험은 필기 도구 (검정색, 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

를 지참하여 시험 당일 09:00 까지 시험장 지정 파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나. 학과시험 합격자로서 심기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심기시험에 소요되는 이용·미용 기구를 지참하여 시험 당일 09:00 까지 시험장소에 집합하여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다. 이용사 수험생은 심기 시험일 15일전부터 조발치 않고 심기 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 미용사 수험생은 세발루 생머리로 심기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시 보건행정과 (72-9441) 또는 각구 보건소 시민봉사실 및 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